

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자료		 보도나온 정부
2019년 12월 13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12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			
배포일시	2019년 12월 12일(목)	담당부서	산업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
담당과장	양광석 과장 (044-203-4540)	담 당 자	권준 사무관 (044-203-4542)

정부 R&D로 개발된 제품, 공공조달 납품이 쉬워진다

- 산업부, 혁신성이 인정된 R&D 제품을 공공기관 수의계약으로 연계하는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” 시행 -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, 이하 산업부)는 **산업부 R&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,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연계하는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”**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동 제도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「**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**」의 세부전략 중 하나인 **혁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**하는 방안의 후속조치에 해당하며,
 - * 정부 R&D 수행 결과물의 혁신성을 평가하여, 인정될 경우 수의계약 허용
- 산업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,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「**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**」을 마련하였다.
- 동 제도는 **정부 R&D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을 마중물로 하여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된(19.3월 시행)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**에 근거하여 시행된다.

<근거조항 :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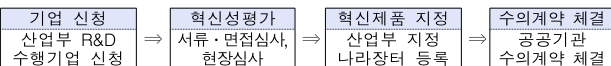
제26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1항제3호아목, 「과학기술기본법」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

- 1 -

-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”는 혁신적 R&D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제도 취지에 따라, ‘19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**산업부 R&D 과제**(종료년도 기준 ‘14~‘19년)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며,
- 평가는 기존의 인증제도와는 달리 제품의 시장성, 혁신성은 물론, 공공조달을 통해 **지자체, 공공기관 등의 업무혁신에 도움**이 되는지 여부 등 **공공성과 사회적 가치**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“**혁신성 평가지표**”를 기반으로 진행된다.
 - * 혁신성 평가지표 : 시장성(30), 혁신성(30),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(40)로 구성
- 심사는 ①**서류·면접 심사**(전문위원회) → ②**현장심사**(전문위원회) → ③**최종심의**(심의위원회)의 절차로 이루어진다.

<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>

- **(개요)**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판로지원과 혁신제품 도입을 통한 정부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가 R&D를 수행한 결과로 제조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
- **(신청대상)** 산업부 R&D 종료 5년 내 과제 중 제품화에 성공한 과제 수행기관
- **(평가지표)** 시장성(30), 혁신성(30),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(40)
- **(지정절차)** 전문위원회 서류·면접심사 → 현장심사 → 조달청합성 심사 → 최종 심의위원회 선정



-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‘**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**’으로 지정되어 **조달청 나라장터**에 등록되며,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희망할 경우 **직접 수의계약**하거나 조달청을 통한 **구매의뢰 절차**를 통해 **수의계약**을 진행할 수 있다.
 - * 나라장터 : 모든 공공기관 입찰정보가 공개되는 전자조달시스템
- 지정된 **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유효기간**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해 **지정한 날로부터 3년간** 유지된다.

- 2 -

- 대상기업은 '19.12.13(금)부터 '20.2.7(금)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(KIAT)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(www.kiat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산업부는 “새롭게 시작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정부 R&D 결과물이 실험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, 기업 성장과 R&D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
 - “내년부터 과기부·중기부 등 여타부처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”라고 밝혔다.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권준 사무관(☎ 044-203-45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